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2002년 12월 26일 조례 제 733호
개정 2003년 9월 19일 조례 제 756호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60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등”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
2. “가로수의 조성”이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3. “원인자”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가로수의 조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행정구역 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조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
3. 도시림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
4. 도시림등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가로수업무 담당부서 국·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6>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로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가로수 조성·관리

제12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 전기·통신 및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구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가스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
5. 그 밖에 가로수 관련 법령·조례 및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13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도로에 따라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로(폭 40미터 이상):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
2. 대로(폭 2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 10센티미터 이상
3. 중로(폭 12미터 이상 25미터 미만): 흉고직경 6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 8센티미터 이상
4. 중로(폭 8미터 이상 12미터 미만):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제15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하여야 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6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 가. 식재간격은 6미터 이상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정할 수 있다.
-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 라. 도로의 동일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한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17조(식재 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18조(지형과 토양보전) ① 시장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에 대하여는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⑤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하여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덩이가 식수대 안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 유지·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훼손자부담금)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훼손자에게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부담금으로 복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훼손자부담금의 징수와 집행 및 원상복구 시 하자를 고려한 비용과 예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원인자부담금) ① 시장 외의 자가 제13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 이식: 당해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 당해 수목가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 당해 소요비용

제22조(부담금의 독촉) 시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3조(가로수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17. 9. 26 조례 제160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6 조례 제169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㉔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㉔ 부터 ㉔ 까지 생략

[별표 1]

훼손자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관련)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자력조림비) 예치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이상, 작업비 : 견적가액

3. 약도의 가지치기인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하자보증금)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이식비

※ 도급공사설계비(자력조림비) : 예치금으로 이식

※ 상용인부 활용시 : 세외수입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도급공사설계비 : 세외세출외현금(자력조림비) 예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원가계산(표준품셈)적용(수목비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지(조경수협회)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시가 적용

또는 단가차액을 증액 적용

○ 예치금납부방법 :

· 보증보험증권 및 현금예치 : 훼손자 및 원인자가 직접 이식 시 하자보증금

· 세입세출외현금(자력조림비) 예치 : 관리청에서 이식 및 제거 시 부담금

○ 예치금예치기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예치(훼손자 및 원인자가 직접 시행 시)

○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의 조성(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종		규격	수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식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액	금 원정()				
	납부기간					
「오산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